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7. 16.(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3차, 제35차 회의록과 속기록, 제36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의는 없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 때 발언과 관련해서….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이의는 없으시니까 일단 순서상 동의하신 대로 접수는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주 전체회의 안건중 종편PP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심결 시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해당 종편PP의 대주주인 일부 신문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회의 때 했던 발언의 취지나 전체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에 인용된 특정 용어를 문제 삼아 자질 운운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편파보도이자 왜곡보도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자료를 통해서 저의 입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방송과 관련해서는 언론전문지, 시민단체, 노조는 물론 학계와 국회에서도 거론되는 문제점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통위원회 입장에서, 특히 종편PP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종편PP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아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기업인 신문을 통해서 비난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인 미국의 FCC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특정 이슈에 대하여 상임위원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개 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방송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액트'(Communication Act of 1934) 섹션(Section) 155을 보면 상임위원 개인의 견해 또는 의견 표명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개개인은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소수의견 또는 추가적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제8조(신분보장 등) 제2항에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편PP의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을 지적해서 종편PP들이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구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 종편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피력했다거나, 특정 신문이 보도했듯이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발언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발언의 전체 맥락을 읽어보시게 되면 취지를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제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지만 외부에서도 특정 맥락이나 용어를 가지고서 의도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비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속기록과 관련한 질문입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속기록은 이의가 없으며, 지금 발언해도 좋고 이따 기타 안건 때 해도 좋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기타 안건 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36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국회에서 요구한 회의록·속기록 제출 의결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국회에서 2014년 11월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 2015년 제16차 회의(2015년 4월 8일)에서 논의한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작역량 평가 결과 공개시,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 회의 내용 중에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음영처리하여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

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37-178)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의결사항 가>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어서 속행된 안건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난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상정되었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에 있어서 제일 아래쪽에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시 동 안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였고, 그날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당 사업자와 이용자의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그 의견은 <붙임 1>에 나와 있습니다. <붙임 1>의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상 여부는 시장 영향, 다른 사례와의 규제의 형평성 및 관련 법령, 실제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번 조사결과는 지난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관계자 의견진술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한 가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 저희 쪽에서는 '에스케이텔링크(주)가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전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진술을 들을 때 사업자 쪽 입장을 들어 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케이텔링크(주)에서는 자신들이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을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담당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저희 담당과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내용은 <붙임 1>에 나와 있습니다. <붙임 1>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요는 <붙임 1> 1쪽에 나와 있고, 해당 사업자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했던 안은 <붙임 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피해의 범위, 또 피해회복의 대상, 내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제안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붙임 1> 2쪽에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인 에스케이텔링크(주)에서도 저희들에게 서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두상으로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번에 이 안건이 피해자 구제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들여다보자고 연기했던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시정조치에 피해자 구제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 보상액을 얼마로 정해서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라면 정책당국이 보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지요. 그것은 법원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관상 비추어 봤을 때 피해액이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범주화해서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경우는 얼마로 묶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는 해당되는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먼저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액수를 얼마로 다 정해 주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한다면 '피해자 측이 수긍할만한, 합의할만한 보상을 해 줘라'라든가 아니면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경우는 얼마 약관상 당연히 받아야 할 할인액과 속인 것의 차이 정도는 해 줘라'라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피해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당국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피해구제해 주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지, 피해구제는 각 개인이 알아서 법적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소송비용과 시간과 그 에너지는 감당할 만한 개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는 시정조치는 정부의 과징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 하는 이유의 하나는 재발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구제입니다. 피해를 받은 이용자, 국민들에게 보상,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한 절차를 밟아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책당국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에스케이 텔링크(주)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의사가 있다, 없다 중에 어느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사는 있다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피해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방안만 제시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피해보상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붙임 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부대금의 차액을 약정 기간인 24개월 플러스 자동연장기간인 12개월 합쳐서 36개월로 분산시켜서 그 차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붙임 1>에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붙임 1>에 제가 봐도 그 금액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붙임 1>의 2쪽에 보면 서류상으로는….

○ 이기주 상임위원

- 2쪽 몇 째 줄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첫 번째 동그라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붙임 1> 에스케이텔링크(주) 제출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거기 2쪽에….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붙임 2> 의견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이용약관 박스를 보시면 24개월 약정이 끝난 이후에도 12개월간 추가 약정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에스케이텔링크(주)는 36개월 요금약정할인과 할부원금의 차액을 보상할 용의는 있다는 정도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왜 그것을 있는 것으로 덧붙여서 해석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예를 들어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제재가 의결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겠다, 복구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방안들을 보고했는지를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래서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구두상으로 저희에게 있는데 그 안을 설명한 내용이 서류상으로는 2쪽 상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약정 이용기간 24개월 이후 12개월간 추가 약정할인 혜택 제공'인데, 이것은 이용약관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약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단에...

○ 최성준 위원장

- 그 사람들이 24개월 넘어서 꼭 사용한다는 보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것은 피해보상 방안이라기보다는 자기네 '이용약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고 위원님도 여쭙 보시고 이기 주 위원님도 여쭙 보신 것 같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의견서에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방통위 실무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보상할 용의는 있다'는 입장만을 피력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서류로 낼 정도로 피해보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문서로 저희에게 제출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피해보상을 해 줄 의사는 있지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말씀하시는게 <붙임 1>인지 <붙임 2>인지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데다가 <붙임 2>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라 <붙임 1>을 봤는데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이 제출됐느냐, 안 됐느냐?” 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있다”고 하면서 <붙임 1>의 2페이지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에스케이텔링크(주) 측에서 피해보상 방안을 제출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오늘 심의·의결하는 데 있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얼핏 ‘피해보상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것으로 들어서 그러는데, 저는 피해보상방안이 꼭 제출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무처와 실무적으로 구두상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오늘 또 피심인이 의견진술을 한다면서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때 또 확인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 회의에서 피해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결을 연기했던 이유는 에스케이텔링크(주)가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사해서 그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할 시한을 주기 위해 하였던 것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화

되지 않았으면 되지 않은 상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오늘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 여쭙 보신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2,186명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2,186명 개개의 사정에 따라 그루핑을 하든지 해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얼마, 이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산정해 낼 수 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 금액 자체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186명 전체 다에 대해서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피해라고 하기는 뭐 한데 어쨌든 그 2,186명의 할부원금과 약정할인금액 이런 부분들은...

○ 최성준 위원장

- 할부원금, 약정할인금액을 계산한다고 해서 피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에스케이텔링크(주)의 TM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망했는지를 따져서...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 부분을 정확하게...

○ 최성준 위원장

- 각각의 경우에 또는 그루핑을 해서 이 사람들은 피해액이 얼마다, 얼마다라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런 부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을 정할 수 없으면 저희가 설사 시정명령을 내릴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범주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은 정신적 위자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관상 할인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는 피해자는 따로 하면 됩니다. 최소한 속인 부분에 대해 추상적인 정신적인 위자료가 아니라 그 차액은 보상해 줘라 '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정신적인 위자료는 당연히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각각의 사람에 대해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피해금액을 확정 지어야 시정명령으로 피해변상을 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시 또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산이 가능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안마다 다를 것 같고, 일단 피해내용을 명확하게...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186개의 보상안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 6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 부분은 피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이행과 또 사후의 조치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업자의 의견진술 순서가 있지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케이텔링크㈜ 의견진술인 입장)

에스케이텔링크(주)에서 김현구 상무님 나오셨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송재근 상무님!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대리인으로 임찬홍 법무법인 엘앤에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 임찬홍 법무법인 엘앤에스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진술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현구 상무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먼저 금번 텔레마케팅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관련 건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회사 업무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알뜰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크나큰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대부분 저희 알뜰폰 사업 초기에 발생하였으며, 에스케이텔링크(주)가 상대적으로 회사의 규모나 사업 경험 측면에서 일천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스케이텔링크(주)는 이번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유통망 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 분들에 대한 보상과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은 사무국과 협의해서 신의 성실하게 시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피해자 구제보상을 하면 좋겠다, 해 달라'는 방통위 사무처의 권고를 받았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강도 있게 받으셨나요? 권고 받은지 한달은 지났습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받았습니까? 얼마나 강도 있는 권고였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지난번 심결 있는 이후로 충분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때의 답변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보상방안은 차후 문제라든가 피해자 측과 좀 더 상의해서 하겠다든가 그런 식의 답변이었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현황분석을 하고, 내부 의견과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보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

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일이 소요가 됐고, 그 과정에서 사무국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방안이 어느 정도 도출되어 있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나와 있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사무처와 협의 중입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에스케이텔링크(주)에서 피해보상 방안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하면 그대로 맡겨 둘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통위 내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논란 중인데 시정명령, 시정조치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저는 과징금을 많이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 구제, 보상액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피해자들이 반발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궁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사무처 부서와 빨리 협의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정명령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피해보상 방안을 확정 지었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2,186명에 대해 에스케이텔링크(주)측에서 개별적으로는 그루핑을 해서든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방안을 확정 지었습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사업본부장 송재근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86명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다 분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말가격과 요금할인 차액은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언제 결정하셨습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이후에 보상을 시작하셨습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아직은 못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시달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보상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물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대다수에 대해 보상을 하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예상합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저희가 고객센터에서 고객분들 100명에게 전화를 무작위로 하면 55명 정도가 1차 콜에 응답이 옵니다. 나머지 4번 정도 하면 93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간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이 언제까지다' 이렇게는...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도 이것을 결정해야지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피해보상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피해보상을 하시겠다면 저희가 그 결정을 뒤로 미루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2,186명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주 내에?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어제 티타임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었다고 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까지 구체화해서 이것을 시정명령에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서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조사한 이후에 지난번 한 차례 회의를 했고 다시 속행이 됐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듣고 시정조치방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2주 뒤에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용자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그 방안을 우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조사한 것이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샘플링 해서 한 것이고, 또 피해 정도나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명문규정도 있는 마당에 자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 아니면 '구체화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이, 과거에 저희가 처리했던 시정조치와 이 경우의 차이는 무엇이고 앞으로 있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개인 의견은 지금까지 피심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과,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저희가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피해자 보상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보상 조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해보상 조치를 할 법적근거가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손해배상에 관련된 명문의 조항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중에 원상회복에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법적근거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진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 ‘피해보상조치를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조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피해보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정명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나중에 제재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도 피해보상에 따라 정상 참작도 있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보상까지 포함시킨 시정명령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저는 그것은 참고사항은 되지만 과거의 행정행위가 미흡했을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해서 충분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에게 다시 확인하겠는데 자진해서 보상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 사무처와 상의하시고, 피해자 측 2,186명은 우리가 조사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따라서 무슨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죄하고 보상하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정책당국에 또는 사법부에 인지된, 조사된 정책대상이 된 건에 대해서 우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그다음 피해자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서도 단순한 과징금 조치만 하고 피해보상 조치를 안 하면 그 개인 각자들이 다 알아서 법적절차를 밟아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개인들이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매우 좋습니다. ‘한 2주 기다려 주시면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안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사건의 경우에 샘플링 조사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샘플링 조사는 아니고 전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에스케이텔링크(주)의 본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위주로...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중 제8호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이것을 들어서 피해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과거에...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8호는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금전적 피해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예로 든 것도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조치입니다.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에스케이텔링크(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계약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서 단말기를 다시 수거하고 지금까지 냈던 돈을 돌려받고 그동안 사용한 것을 정산하고 해서 없던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원상회복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피해회복과 같은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제8호의 입법 취지는 아마 당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난 '11년도 KT의...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2011년도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는 이 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2011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를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금전적으로 피해보상하는 부분은 적용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 들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때 KT가 원상회복 조치를 한 근거조항으로...

○ 최성준 위원장

- 근거조항을 쓴 것은 아는데, 그것을 제가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확대해서 적용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국장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 말씀하십시오.

○ 이수경 사무관

-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여기 원상회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법률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손해배상하는 것과는 약간 별개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례에 적용하면 아예 계약을 다 해제시키고 단말기도 반환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제로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원상회복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정리하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연기를 한 것은 제가 피해회복을 이야기해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저희가 피해회복을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또는 시정명령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스스로 자신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가 과징금을 정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인지, 약한 중대한 위반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요소로 되어 있다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회복에 직접 관여해서 어떻게 피해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가 과징금을 처분함에 있어서 충분한 양정사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각 사업자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저희 사무국을 통해 저희가 보고받은 부분

에 약간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주 시간을 주면 100%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연락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에스케이텔링크(주)가 파악한 내용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실현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과 김재홍 위원님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하나 확인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반건수 2,186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정할인과 단말기 할부금 차이가 앞으로 피해 배상할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신 의견서 2페이지 에스케이텔링크(주) 이용약관을 보면 “24개월 약정 신청 시, 약정 이용기간 24개월 이후 12개월간 추가 약정할인 혜택 제공”, 여기에 보면 36개월로, 12개월이 자동으로 더 추가로 제공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기본적으로 최초에 계약할 때는 24개월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지난 약관 변경이 작년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실제로 TM이 일반 소비자와 계약을 할 때 얼마로 약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최초 계약할 때요?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저희가 조사해 보니 보통 36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무슨 말씀입니까? ‘12개월 추가 약정할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단말기 대금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요금약정은...

○ 고삼석 상임위원

- 요금약정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24개월입니까, 36개월입니까? 요금할인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요금 약정할인과 단말기 할부원금을 분납하는 기간이 불일치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정할인을 24개월로 했다가 12개월 자동할인이든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했든 36개월로 연장한 분들이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그러나 하면 그것이 피해구제 대상자와 범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쟁점 아닙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그 자료를 제가 보긴 봤는데 기억을...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봤을 때 지금 정확히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용자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제방안들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은 한 달 전에 저희가 동 안건을 심의하고 이용자피해 구제방안 등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의결하자고 해서 늦춰 왔는데,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이견은 있었습시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 이기주 상임위원

- 자꾸 이견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하기로….

○ 고삼석 상임위원

- 죄송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비교해서 하지 않기로….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전에 저희들이 심결했던 것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금을 과다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제재는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용자 피해가 많지는 않았습시다. 피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혜택을 많이 줬다는 것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할인 그 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제재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 피해회복 여부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자 개개인의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개개인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하든 신청을 하든 소보원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들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8호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이것이 전기통신설비의 수거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용자에 대한 금전적인 원상회복까지 포함시키느냐에 약간 이견이 있었습시다만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으로 사업자는 위법행위를 하고 저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피해구제는 이용자 개개인에게 맡기고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님의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그런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거나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들, 이런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어떤 위법행위를 하고 나서 과징금 등 제재를 받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한 것 같지 않고, 또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를 구제했는지, 원상회복했는지 이에 대해서 점검이나 보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고 또 가급적이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고칠 것이 없는 것인지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결정하자는 취지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어떤 전제로 결정하자는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쪽에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제출 가능하십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지금 문서상으로는 조금….

○ 최성준 위원장

- 만약에 문서상으로 지금 제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것을 전제로 의결했는데, 사업자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미흡하다면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심인의 발언을 듣고 심의·의결하는 것을 broadly 하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구체적인 보상방안, 그것을 날짜를 딱 정해서 제출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출받는 것이 아니고 2주만 시간을 주면 다 피해보상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완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연락이 되는 분들에게는 다 하시겠다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이 과징금 산정기준에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보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샘플조사를 했다고 한 그 용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단말기 무료교체라고 홍보해서 이렇게 가입을 유도한 그 기간 중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람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상방안을 검토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이 프로모션을 제공받고 가입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 물어보는 확인절차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샘플에 해당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피심인 측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저희가 최종 결정하든지, 아니면 조치한 결과를 보고 하든지 그렇게 하자는 데 대해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앞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티타임 때 제안을 드렸지만 소비자 보호법상 피해보상 방안, 또는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보상 제도 이런 것들을 차제에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우리 제도도 보완하고, 그렇게 뭔가 제도 내지는 규정을 구체화한 연후에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사무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무국에서 말씀하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피심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2주일 이내에 제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그만큼 어려웠던 이유는 위반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해석, 그 말씀은 약정할인과 단말기 할부금의 무료교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또 이번에도 2,186건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에 한해서만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전이나 그 이후, 또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전체 가입자 대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과 의견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2주일 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차이를 해소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피심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출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인정한다면 또 실제 이용자 피해, 그 이외 다른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무국에서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런 TM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TM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것

과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으로 정했지만 그 기간 동안 민원이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어떠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TM과 관련된 다른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에스케이텔링크(주)에 맡겨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또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에스케이텔링크(주)가 알아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론 그것을 완전히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다 일일이 고려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정해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문제되는 부분은 또 추후에 별도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케이텔링크(주)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면 사건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어제 티타임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에스케이텔링크(주)에서 생각하는 것은 차액을 36개월로 나누되, 전체 2,186명 중에서 결국은 적용대상이 한 400여 건에 한정되고 금액도 계산컨대 한 4,000만원에 불과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케이텔링크(주)에서 피해를 변상하겠다는데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원래 약정이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연장해서 36개월로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적게 피해회복을 하겠다, 그것은 에스케이텔링크(주)가 알아서 정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24개월로 하십시오' 아니면 '36개월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에스케이텔링크(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피해회복이 되어서 온 것을 보고 저희가 충분한 피해회복이 됐으면 과징금을 산정할 때 많이 감경해서 산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피해회복 흉내만 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피해회복을 권유할 수 있지만 피해회복을 계산해서 '이 금액을 하십시오', '저 금액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을 사무처에서 왜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고, 에스케이텔링크(주)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기본 원칙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을 하시겠느냐?', '하겠다', '그러면 그 피해회복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 시간 드리고, 피해회복이 된 것을 봐서 피해회복이 완벽하게 됐으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면 되고, 피해회복이 조금 부족하게 됐으면 부족한대로 저희는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러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붙임 1> 2쪽에 있는 내용의 표현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담은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 정도의 피해보상 방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계획, 방안 다 의미 없습니다. 계획, 방안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행될 수도 있고 안 이행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계획, 방안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이 되었느냐를 저는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해회복은 실제로 이행된 부분을 본다면 ‘<붙임 1> 의견서는 그런 의지가 안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스케이텔링크(주)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류로 제출할 수는 없지만 피해회복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 피해회복 계획은 약정기간 24개월에 12개월을 추가해서 한 부분에 요금할인을 뺀 차액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서 세운 계획일 텐데 그것이라도 2주 내 다 피해 보상하겠다는 계획이지요?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사무국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원래 계약할 때부터 약정기간이 24개월이고,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것은 3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요금은 24개월로 되어 있고, 단말기 할부원금은 3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단말기 할부금이 36개월로 되어 있고, 요금은 24개월 약정으로 되어 있고….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단말기 할부금이 36개월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분은 12개월을 더 쓸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서 12개월 추가 약정할인까지 계산해서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저희가 적절한 피해보상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피해보상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2주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피해회복의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되겠습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무처에서 '피해조치에 대해서 그동안 의견차가 컸고...',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피심인 측에서 한 것, 하겠다는 것만 받아서 위원회에 올려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이래야 한다', '저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하나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TM으로 해서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서는 다 교부를 안 하셨지요?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원래는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TM으로 하는 것은 녹취가 저희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녹취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녹취가 모두 1, 2, 3차에 걸쳐 TM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녹취는 3차 TM 때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3차 TM 때의 녹취록도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저희가 8월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하자면 우리 구성원들이 유선 기반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선에 대한 경험이 아주 일천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 늦게 알고 '녹취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이 8월부터 녹취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무리 알뜰폰이지만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이행계획을 체결하고 계신데 계약서를 안 쓰고 그다음에 전화로 통화해서 계약내용을 결정했는데 녹취를 계약서 대신으로도 보관하지 않고, 이것은 기본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TM 했었던 것을 5월 이후에 알아서 보니까 전부 사전에 했던 것들은 대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입신청서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계약내용을 녹취로 반드시 해서 계약기간 동안 내내 보관하시든가 아니면 TM 이후에 직접 대면은 번거로우실 테니까 온라인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약서를 체결하시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와 같이 계약서를 구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할 것은 없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전에 안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요사항의 미고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같은 위법행위로 지적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흡수돼서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김현구 SK텔링크(주) 전략기획실장

-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2주 정도 시간을 드리고 8월 중순경에 다시 기일을 잡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과연 36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 보상인지는 저희가 따로 평가하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충분한지는 의문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재근 SK텔링크(주) MVNO사업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에스케이텔링크(주) 의견진술인 퇴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피해보상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다시 속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나.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15-37-17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 및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2014년도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교환율은 1:0.41로 하며,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경과 사항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217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TV방송과 일간신문에 대한 매체이용행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3월 375개 TV채널별 시청점유율을 산정한 결과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까지 방송사업자 소유지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조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최종 합산 결과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시청점유율 산정방법입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법 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등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 본인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에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합니다. 반영비율은 방송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그리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신문 구독률의 환산 시청점유율은 100% 합산하고,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또는 방송사업자 주식·지분 소유 시 신문구독률은 지분비율 만큼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매체교환율입니다. 매체교환율이라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 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매체이용행태 조사를 작년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 결과 및 2014년도 시장 조사결과와 광고매출액을 통해 2014년도 매체교환율을 측정한 결과, 일간신문의 영향력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0.41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년도 매체이용행태(이용자) 조사 결과>와 <'14년도 광고매출(시장) 조사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8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환산방법은 2014년도 일간신문의 유료구독 가구부수를 통계청 장래가구추계통계로 나눈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대해 매체교환율을 곱하여 환산한 시청률을 구한 다음 이를 2014년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서 일간신문 구독률의 환산 시청점유율을 구했습니다. 일간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결과, 조선일보 계열은 6.354%, 중앙일보 계열은 3.957%, 동아일보 계열은 3.120%, 매일경제 계열은 1.02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입니다. 산정 대상은 TV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217개 방송사업자 375개 채널 및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28개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지상파는 32개 사업자 64개 채널, SO는 41개 사업자 98개 채널, PP의 경우 143개 사업자 208개 채널, 위성방송 1개 사업자 5개 채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상파의

경우 KBS 31.210%, MBC 15.633%, SBS 9.108%, EBS 2.653%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SO 계열의 시청점유율은 CJ 계열의 씨제이이엔엠이 8.713%, 티브로드 계열의 티캐스트가 2.965%, C&M 계열의 씨유미디어가 2.028%, HCN 계열인 현대미디어가 0.882%, CMB 계열의 씨엠비홀딩스가 0.286%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시청점유율 비교표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편성·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일보 계열의 조선방송은 9.440%, 중앙일보 계열의 제이티비씨는 7.490%,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에이는 5.776%, 매일경제 계열인 매일방송은 4.572%, 와이티엔 1.718% 및 연합뉴스티브이 1.184%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방송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볼 때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BS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KBS는 31.210%입니다.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2014년도 매체교환율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는 대외에 발표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는 고정형TV의 실시간 시청만입니까, 아니면 고정형TV의 VOD 시청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현재 방송법상 시청점유율은 고정형TV 실시간 방송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으로 한정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결과를 보도자료로 다 공개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오늘 위원님들께 배포한 첨부물과 관련해서 <붙임 1> 자료 중 특수관계자, 지분소유 구 독물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타로 합산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이 의결주문과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4> 자료는 다 배포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국민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학계의 연구자료이기도 하는데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을 0.41%로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그것도 연구용역의 결과로 나온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지금 방송법과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출한 결과인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매체이용행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인식조사가 들어가고 작년도 방송과 신문의 광고매출액을 또 비율로 해서 환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훈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훈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 사유에 ‘이용자업무 평가결과’를 추가하며,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하여 해당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즉 고시로서의 일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재정 취하시 소급 소멸 효력만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충분히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재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은 소 제기시 중지되지만 중지된 재정이 언제 종결되는지, 또 재개되는 경우에 재정기간 진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판결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중지된 재정이 종결되고, 당사자 일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정이 재개되며, 이때 재정이 재개되는 경우에 재정기간은 민사소송법과 같이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제재 요청, 또 이용자가 판매점과페이백 등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강제 요청하는 등 재정신청 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재정 각하의 사유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재정취하, 알선 종결 등으로 인하여 재정이 종결된 경우도 각하 사유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선 종결시 재정도 종결되는 것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위원회 고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금년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계획상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평가 결과 업무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과징금을 감경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우수한 등급의 경우 30/100 이내'로 추가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으로서 위원회 훈령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훈령의 재검토키한이 현행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이 도래하므로 3년을 연장하여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개정해야 하나, 최근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키한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까지 대신에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에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일부 개정안 세부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규제심사는 어디 규제심사를 받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법제처와 규개위의 심사를 받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법제처와 규개위 두 군데 다 받으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법제처는 아닐 것 같습니다.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법제처는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만 받는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다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어제 제 방으로 저의 정치활동 여부에 대해서 묻는 공개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각 상임위원실로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청한 것이기도 하고, 저도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님들 모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원 출신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활동 금지는 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실정법상 규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법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사족이지만 이 회의에서 발언한 것이나 또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책적 소신과 제 철학의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앞으로는 어떠냐?' 하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2016년 내년 4월 총선거를 위해서 지역구 조직활동과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저는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상임위원으로서 독립성을 지키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함께 요청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저는 언론인으로 대학교수로서 제 전문성에 바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대학으로 복귀해서 강의하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직업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출마 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비공식 자리에서, 기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분들께는 저는 더 이상 선거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또 그렇게 공개질의서를 보내온 것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방통위 상임위원의 법적지위라고 할까, 정치적 중립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지만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0시 폐회 】